이달의 초점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현황과 과제

거주시설에서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적용 과제

|마한얼|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보장 현황 및 과제

|주보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 과제

|이상정|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책 과제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포럼 [2024. 03.] DOI: 10.23062/2024.02.4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 과제[1)]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 Residential Foster Care Facilities and Its Implications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재까지 보호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의식주의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 등과 관련된 보호권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아동 또한 스스로의 삶의 주체로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생활하는 동안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 조치, 입소에서부터 보호종료까지 보호의 전 과정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022년 6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정 과제로 포함하며 2023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2027년까지 가정형 보호 비율 60%까지 확대와 같은 단계적 실현 계획이 제시되었다(강은나 외, 2023). 그러나 정부의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1) 이 글은 이상정, 주보혜, 이민경, 권영지, 강민희, 김성희, 임세희, 심석순, 김혜진, 강현주, 허선영, 김민정, 마한얼. (2023).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과 보호-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제2부 '거주시설 아동의 인권과 보호' 내용을 일부 발췌해 수정한 것이다. (IRB 승인번호: 제2023-113호)

[표 1] 가정 외 보호아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계
연도	명	%	명	%	명	%	명
2018	11,100	44.2	2,872	11.4	11,141	44.4	25,113
2019	10,585	44.3	2,949	12.3	10,384	43.4	23,918
2020	10,351	44.2	3,126	13.4	9,923	42.4	23,400
2021	10,121	45.1	2,776	12.4	9,535	42.5	22,432
2022	9,439	44.0	2,669	12.5	9,330	43.5	21,438

자료: 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 통계연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79414&tag=&nPage=1 2024년 2월 8일 인출.

않았으며, 보호대상아동 약 2명 중 1명은 여전히 아동복지시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2022년 기준 학대, 부모의 빈곤과 실직 등의 이유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289명으로, 이 가운데 가정 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1,881명 중 913명(48.5%)이 아동복지시설로 보호 조치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리양육 체계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 외 보호아동 현황에서도 시설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4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할 경우 56%의 가정 외 보호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정부의 보호아동 탈시설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가정 외 보호 기간이 평균 11~12년으로 나타났고(이상정 외, 2019; 이상정 외, 2020), 16세 이상 시설보호아동 중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2.5%에 불과해 시설보호아동의 대다수가 만 18세 이전 인생의 대부분을 장기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이에 더하여 2021년 12월 만 24세까지 조건 없이 아동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정 외 보호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정 외, 2020).

보호아동의 높은 시설보호 비율과 가정 외 보호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탈시설화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상당수가 아동·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시설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인권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보

호아동 탈시설화가 추진되고, 시설 양육이 최소화되더라도 과도기적 과정에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아동의 인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은 '권리 주체로서 아동'을 일상생활에서 실현시키고자 아동 참여, 의견표명권 보장 등의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호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의식주의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 등에 관련된 보호권에 머물러 있다. 보호아동도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생활하는 동안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권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정책 현황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권리 보장은 정부의 아동복지시설 관련 법률과 운영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아동복지법」, 「2023 아동분야 사업 안내」,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에 대한 조항에 비해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지침과 근거는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동보호 조치의 절차상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를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조치 여부, 보호 조치 유형, 보호 기간을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 당사자의 의견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아동보호를 의뢰받은 기관 담당자를 통해서만 전달 가능한 상황이다. 아동에 대한 상담은 "만 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상담은 의무화하지 않았으며, 만 12세 이상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아동 의견 청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은 아동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을 누가 어떻게 언제 확인할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장기 보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보호 조치 결정통지서는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에 송부할 뿐 아동에게 안내하고 아동의 의견을 묻는지 여부는 적시하고 있지 않다. 사례관리 종결 결정, 귀가 조치 결정도 역시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은 매뉴얼상 지침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 보호 조치 과정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서식은 대부분 보호자의 양육 상황과 보호자의 의견에 집중하고 있다. 아동의 상황이나 욕구를 파악하고

자 하는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나마 아동의 욕구와 상황 조사를 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인지, 아동의 보호자나 후견인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인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매뉴얼은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의 상담 내용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하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별도 구성한 서식은 '아동상황점검표'가 유일한 상황이다. 분리보호와 관련, 아동의 의견은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의 2개 항목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아동에게 누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분리보호 관련 아동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동에게 분리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의견 청취를 지원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동복지시설로 보호 조치된 이후에도 아동의 참여, 의견 반영과 같은 자기결정권 보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설 입소 후 전출, 퇴소, 가정복귀 절차도 아동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모호하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아동의 상태와 욕구'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으며,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도 미흡한 상태이다.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재 아동복지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아동 인권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아동 의견 청취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또한 아동 및 부모, 지역사회의 시설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내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회의를 분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설 내 학대에 관한 실태 파악과 소극적인 예방 차원으로 거주시설 보호아동의 참여와 의견 반영에 관한 심층 탐구와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재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책 현황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이 이루어졌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를 제외하고(국가인권위원회, 2017) 아동의 참여권을 조사한 연구는 없다. 아동 4대 권리 중 아동이 스스로의 삶이나 중요한 사항에 의사표현을 하고 결정하는 참여와 자기결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이상정 외, 2023).

 DOI: 10.23062/2024.02.4

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설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실태 및 경험 조사'를 수행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입소부터 만 18세 이상의 보호 종료 연령 도래로 퇴소하여 보호의 전 과정을 경험하여 보호 과정의 자기결정권 관련 문항에 응답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 당시 자기결정 경험에 관한 회상적 응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2]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협조를 통해 206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가. 일상생활 관련 자기결정 경험

자립준비청년이 응답한 일상생활 속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할 당시 일상생활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었다"와 "내가 사용하는 공간(방)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었다"에 대해서는 약 2명 중 1명 이상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전반적

[표 2] 일상생활 자유

(단위: %)

문항	전혀 할 수 없었다	별로 할 수 없었다	자주 할 수 있었다	항상 할 수 있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과 저녁에 잘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다	7.3	36.4	32.5	23.8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었다	21.8	30.6	28.2	19.4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장신구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3.4	26.2	35.0	35.4
나만의 공간(방)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9.2	40.3	24.3	26.2
내가 사용하는 공간(방)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었다	21.8	32.0	23.8	22.3
휴대폰이나 전화를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6.8	21.4	47.6	24.3
주중 혹은 주말의 하루 일과는 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냈다	2.4	19.4	50.5	27.7

자료: 이상정 외.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p. 297. 〈표2-3-24〉.

2)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라는 인식이 높은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를 자립의 주체로 인식 전환을 하고자 '자립준비청년'으로 2021년 7월부터 공식화함. 출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관계부처 합동, 2021. 7. 1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79414&tag=&nPage=1 2024년 2월 8일 인출.

[표 3] 일상생활 속 고충 처리

(단위: %)

문항	전혀 할 수 없었다	별로 할 수 없었다	자주 할 수 있었다	항상 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의 고충을 쉽게 말할 수 있었다	10.7	27.7	32.0	29.6
내가 말한 고충에 대해 처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10.2	32.0	35.9	21.8

자료: 이상정 외.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pp. 297-298. 〈표2-3-24〉.

[표 4] 가족 교류

(단위: %)

문항	전혀 할 수 없었다	별로 할 수 없었다	자주 할 수 있었다	항상 할 수 있었다
내가 가족과 연락(방문 포함)하고 싶을 때 시설 선생님께 언제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다	0.0	9.8	48.9	41.3
내가 가족과 연락(방문 포함)하고 싶지 않을 때 시설 선생님께 언제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다	3.3	9.8	42.4	44.6
내가 원할 때, 문자나 전화로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었다	1.1	7.6	35.9	55.4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	2.2	32.6	37.0	28.3
가족이 나에게 문자나 전화로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었다	1.1	7.6	37.0	54.3
가족이 원할 때, 언제든 나를 만나러 방문할 수 있었다	1.1	19.6	41.3	38.0

자료: 이상정 외.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p. 311. 〈표2-3-23〉.

으로 시설 생활에서 아동의 자유는 보장된 편이었지만, 식사 시간과 개인 공간에 대한 경험은 다소 제한된 편이었다. 기상 및 취침 시간, 식사 시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교류에서 시설별로 유의한 편차가 있었다. 특히 양육시설이 공동생활가정보다 규칙의 유연성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상정 외, 2023).

한편 일상생활에서 고충을 쉽게 말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은 61.6%로 나타났다. 고충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자립준비청년이 38.4%로 나타났는데, 고충에 대해 처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는 비율은 42.2%로 더 높게 나타나 고충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고충 처리 결과에 대해 환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대체로 자신이 원할 때 가족과 연락하고, 시설 선생님에게 가족과의 연락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

가 원할 때, 언제든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 "가족이 원할 때, 언제든 나를 만나러 방문할 수 있었다"에 대해 각각 34.8%, 20.7%의 비율로 '할 수 없었다'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즉 가족과의 문자나 전화를 통한 연락에 비해 가족과의 만남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낮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아동이 원할 때 언제든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시설 유형별로 유의한 편차가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한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가족과의 만남에 더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3).

나. 보호 기간 서비스 관련 자기결정 경험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병의원 방문이나 약 복용과 관련한 문항이었다. 자기결정 경험 관련 문항에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최소 의견을 말하거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의 규칙을 정할 때, 혹은 방을 공유할 친구를 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비율은 각각 38.3%, 38.8%로 낮았다. 내가 이용할 시설 내외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정할 때, 시설 내 자치활동을 논의할 때, 나와 가족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시설의 규칙을 정할 때 관련 사실 또는

[표 5] 보호 기간 서비스 관련 자기결정 경험

(단위: %)

문항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음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알려주었지만 내 의견을 묻지 않음	의견을 말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내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
나를 위한 지원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6.8	20.4	20.4	52.4
내가 지원받을 외부의 서비스(심리검사·상담, 복지서비스 등)를 정하거나 이용할 때	11.2	23.3	14.6	51.0
내가 이용할 시설 내 프로그램(예: 멘토링, 여행·여가, 가족 방문 등)을 정하거나 참여할 때	11.7	21.4	17.5	49.5
시설 내 자치활동(간담회 등)에서 안건(내용)을 논의할 때	11.7	22.3	18.4	47.6
나 또는 가족의 정보를 다른 기관의 선생님에게 제공해야 했을 때	14.1	22.8	12.6	50.5
시설의 규칙들을 정할 때	14.6	21.4	25.7	38.3
내 방을 함께 사용하는 친구(룸메이트)를 정할 때	11.2	22.3	27.7	38.8
종교 활동을 할 때	9.2	23.8	15.0	51.9
병의원을 가야 할 때	1.0	6.3	11.2	81.6
병의원에 다녀온 후 약 복용이 필요했을 때	1.5	5.8	9.2	83.5

자료: 이상정 외.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p. 332. 〈표2-3-35〉.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정보는 주었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시설 내 자치활동에서 안건을 논의하거나 생활환경 등 시설의 규칙들을 정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양육시설이 공동생활가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23).

다. 보호 과정 자기결정 경험

보호 과정 동안의 자기결정권 경험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호 조치 및 입소 단계에서는 아동 당사자에게 사실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 또는 정보를 주었지만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립 준비와 보호 종료 단계로 갈수록 당사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자기결정의 경험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 조치 단계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기로 정할 때와 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의 보호 유형을 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이 낮았다. 입소 후 아동이 쓸 방을 정할 때도 당사자의 의

[표 6] 보호 과정 자기결정 경험

(단위: %)

문항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음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알려주었지만 내 의견을 묻지 않음	의견을 말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내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
보호 조치	부모님(가족)과 떨어져 살기로 정할 때*	17.1	19.7	8.5	23.9
	시설, 위탁가정 등 어떤 시설에서 살지를 정할 때*	14.3	14.3	14.3	23.8
입소	시설에서 내가 쓸 방을 정할 때	21.4	26.2	18.4	34.0
	(공무원, 선생님 등) 내가 시설에 잘 적응하는지 확인했을 때	14.1	21.4	18.9	45.6
	시설에서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10.2	16.5	15.0	58.3
자립 준비	자립계획(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3.9	16.0	16.5	63.6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때	7.3	9.7	17.0	66.0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 취업 등의 진로를 결정할 때	2.4	10.2	19.4	68.0
보호 종료	만 18세에 보호 종료(퇴소) 또는 연장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2.9	6.8	20.9	69.4
	(자립지원 전담 기관, 선생님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4.9	9.2	16.5	69.4
	만 18세 이후(연장 보호, 보호종료 등) 살 곳을 정할 때	2.9	5.8	16.0	75.2
	보호 종료(퇴소) 시 지원받을 서비스를 신청할 때	4.4	8.7	11.7	75.2

주: *"기억나지 않음" 응답 비율 각각 순서대로 30.8%, 33.3%임.
자료: 이상정 외.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p. 340. 〈표2-3-40〉, p. 351. 〈표2-3-46〉.

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보호 종료 단계에서 보호 종료 여부의 결정, 사후관리 계획 수립, 보호 종료 후 거주지 결정, 보호 종료 서비스 신청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했다는 비율은 69~75%로 높았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양육시설에서 보호받은 아동일수록, 시설에서의 생활 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보호아동의 평균 보호 기간이 약 12년 정도임을 고려할 때(이상정, 2020), 많은 아동이 10세 미만에 보호 조치 및 입소가 이루어져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상정 외, 2023).

4 나가며

양육시설은 대규모 집단 거주시설로 아동보호를 위해 전체가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별 아동의 의견 청취나 반영은 더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양육시설 아동의 자유와 의견 반영 정도가 공동생활가정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한 아동이 양육시설 아동보다 가족과의 만남에서 더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 과정에서의 자기결정 경험은 보호 조치 및 입소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보호 단계나, 보호 종료 단계보다 아동 의견의 반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단계에서는 아동의 의견이 비교적 반영된 편이었지만 보호 조치 단계에서는 아동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보호 조치 단계에 대해 시설별, 생활 기간별로 유의한 편차가 있었는데, 양육시설에서 보호받은 아동일수록, 시설에서의 생활 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약 7명은 스스로의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정보를 듣고 말할 기회를 제공받고, 스스로의 결정이 반영된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험이 보호 종료 후 자립생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상정 외, 2023). 즉 보호아동의 보호 기간 동안 인권 보장은 물론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기결정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복지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시설 규정'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시설 내 또래와의 좋은 관계'와 '시설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라고 응답했다. 즉 시설 내 분위기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시설 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방안들에 대해 필요성도 높

[표 7] 자립준비청년이 생각하는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

(단위: %)

문항	중요도		필요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설 규칙	3.19	0.61	3.35	0.59
시설 내 또래와의 좋은 관계	3.56	0.60	3.55	0.60
시설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	3.52	0.61	3.53	0.61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기회	3.50	0.59	3.52	0.63
시설 내 프로그램, 활동 등 공동 참여 경험	3.23	0.74	3.26	0.71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시설 규정	3.57	0.56	3.58	0.61

자료: 이상정 외.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p. 392. 〈표2-3-69〉.

게 평가하였다.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시설 규정 등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필요한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자기결정권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규모 양육시설 보호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가정과 같은 소규모, 가정형 보호 형태로 가정 외 보호 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양육시설은 가정 외 보호 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로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아동의 수가 많다. 즉 종사자 1인당 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개별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어려워지고, 아동은 과밀화된 공간에서 일상생활 속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시설 규칙 등에 관한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호아동의 인권,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 수 대비 보호아동 수 비율 기준을 개선하여 종사자가 개별 아동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탈시설화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치회, 가족회의 등의 정기적 운영, 아동의 의견에 대한 환류 절차 등을 시설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선생님, 아동 등 시설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및 종사자 대상의 아동 인권 교육에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실천 기술 등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종사자 업무 매뉴얼에는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과 보장 방안을 구체적 지침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학대 예방과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가 중심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인권 보호 매뉴얼은 아동 인권의 범위를 넓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호아동의 참여와 자기결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이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 절차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이 시설에 배치될 때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점이 양육시설의 개선 사항으로 권고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3] 보호조치 시 아동에게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등 아동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절차상 지침이 필요하다. 보호 중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육 상황 점검 항목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곳에서 살 수 없을 때, 아동 입장에서는 현재 시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데, 아동에게 다른 대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거주환경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기회를 보호 과정 동안 제공해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는 보호 조치 및 입소에서부터 보호종료,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서 아동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고, 스스로 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의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경험에 관한 조사는 보호 조치부터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까지 아동보호서비스의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기를 거주시설에서 보낸 자립준비청년의 회고에 기반하고 있어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어 결과 해석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은나, 안수란, 이상정, 이한나. (2023). 2023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15**, pp. 40-62.

관계부처 합동.(n.d.).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0&act=view&list_no=374162&tag=&cg_code=&list_depth=1 2024년 3월 12일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79414&tag=&nPage=1 2024년 2월 8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17). **2017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2).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176에서 2023. 12. 27. 인출.

보건복지부. (2023). **2023 보건복지 통계연보**. https://

3) 국가인권위원회. (2022.7.19.). 인권위 소식.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https://m.blog.naver.com/nhrck/222818951194 2023년 12월 27일 인출.

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2024. 2. 8. 인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a). **2022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b). **2022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아, 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조사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주보혜, 이민경, 권영지, 강민희, 김성희, 임세희, 심석순, 김혜진, 강현주, 허선영, 김민정, 마한얼. (2023).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과 보호-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4. 03.] DOI: 10.23062/2024.02.4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 Residential Foster Care Facilities and Its Implications

Lee, Sang J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children in foster care have to date been regarded solely as objects of protection, public attention toward their human rights has remained limited mostly to their right to protection, such as the right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o safety. However, as much as the subjects of their lives as other children are of theirs, these children, while living in foster care, must have the rights to live as the masters of their own lives, to engage in activities freely, and to express their thoughts. Ensuring these rights requires enabling the children in residential foster care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fundamentally the right to freedom. This article presents the findings of a survey we conducte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safeguarding self-determination for children residing in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discusses policy options for improvement. The survey involved youth i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who had firsthand experience with living in foster care all the way through from placement and entry into the system to exiting it.